

# 선수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: 2014. 4. 18.

개 정 : 2015. 4. 30.

개 정 : 2016. 2. 24.

**제 1 조 (설치근거 및 명칭)** 대한장애인럭비협회(이하 "장애인럭비협회"라 한다) 정관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선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 2016. 2. 24.>

**제 2 조 (목적)** 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,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장애인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장애인올림픽 정신의 보급.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 조 (적용범위)** 장애인럭비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적용한다. <개정 2016. 2. 24.>

**제 4 조 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
1.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휠체어럭비대회 관련,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장애인올림픽 정신의 보급 .확산
2. 국제휠체어럭비연맹 선수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 2. 24.>
3.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/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4. 선수등록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 2. 24.>
5.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 2. 24.>
6.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
7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8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

**제 5 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1~3인 <개정 2015. 4. 30.>
3. 위원은 각 시도별 선수대표 1인으로 임명한다.(단, 팀이 없는 시도는 제외) <개정 2015. 4. 30.>

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.

1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2.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3. 위원은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, 위헌 선임 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하고 전국 규모 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자이어야 한다. <신설 2015. 4. 30.>
4. 선수활동기간 중에 징계(자격정지 이상)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 결과가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

된 자이어야 한다. <신설 2015. 4. 30.>

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 (위원의 선출 방법)** ① 위원은 장애인력비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의해 선출한다.

② 직선제로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선출을 실시하되 세부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은 시·도장애인력비협회 등록되어 있는 선수중에 직선제로 선출한다.

2. 장애인력비협회 선수위원장은 등록된 선수에 의하여 전국대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한다.

3.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.

4.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에 장애인력비협회 사무국에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한다. <개정 2016. 2. 24.>

**제7조 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시·도장애인력비협회에서 선임한 선수대표로서 시·도장애인력비협회의 회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 2. 24.>

**제8조 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9조 (임기)**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6. 2. 24.>
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0조 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.
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
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

4.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. <신설 2015. 4. 30.>

**제11조 (회의 소집)**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2조 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**제13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

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,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### **부 칙 (2014. 4. 18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14.4.18>

### **부 칙 (2015. 4. 30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2015. 4. 30.>

### **부 칙 (2016. 2. 24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2016. 2. 24.>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. <2016. 2. 24.>

**제3조(선수등록규정에 대한 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장애인력비협회 선수등록 규정 제2장 (선수자격심의 위원회) 규정은 삭제되고 이규정으로 대체된다. <2016. 2. 24.>